

2017 년 연말정산 안내문

1. 연말정산 대상자 : 2017 년 12 월 31 일 기준 캡스텍 재직 근로자(2017 년 12 월 31 일 퇴사자 포함)
2. 서류제출 기한 및 접수방법: 2018. 01. 24.까지 본사 우편 접수
3. 제출서류 : (기본서류)소득공제신고서 - 본인 작성(마지막장 하단 신청인 서명 필수)

본인 외 추가 가족사항(인적공제) 작성 누락시 공제

불가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사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공제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매년 연말정산시 마다 제출 하여야 함(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가 없고 본인 외 가족 인적공제가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서류)추가 공제시 해당 서식 및 증빙 자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 보장성보험,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소득공제 등

-월세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12 월 31 일)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총급여 7 천만원 이하로서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25.7 평) 임차계약인 월세 금액의 10%(연 750 만원 한도) 세액 공제 가능. 단! 세대원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항 충족자에 한함

①세대원 본인이 지급,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것,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

②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자료 중 선택 제출)

-한부모가족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 중복 불가(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인적공제 대상자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의료비 증빙 서류 제출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약국, 병원에서 1 년치 사용금액을 요청하여 지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시 퇴직연금 공제 금액은 회사가 불입한 금액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불입한 금액만 해당

4. 2017 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 타 회사의 경력이 있으면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제출(2017 년 캡스텍 재입사자 포함)

-타 회사와 합산 신고가 되지 않으면 2018 년 5 월에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불 이행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주의사항

-2018. 01. 24 까지 미 접수 근무자는 연말정산 본인 공제 외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번 및 근무사업장명 기재 요청

-환급금액 및 징수금액은 2018 년 3 월분 급여 지급시 반영

-소득공제신고서 본인작성(미 작성시 본인공제 외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보낼곳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 길 36 OTC 타워 2 층 (주)캡스텍 연말정산 담당자 앞(135-873)

7. 문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캡스텍 홈페이지(www.capstec.co.kr)

-전화번호:02-3485-9669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항목별동여부	[] 전년과동일	[] 변동			분납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llegible]

1.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① 3 다)	5*
형제자매 (소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 50 ① 3 마)	8

2.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4.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5.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6.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비용분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8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연금보험료 계					-			
Ⅲ.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	전액			
		보험료 계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금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			
				30년 이상			-			
			2012년 이후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상환 대출		-				
				기타 대출		-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대출			-		
				10년-15년	기타 대출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 대출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이월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				
	기부금이월분(합계)					-				
	Ⅳ.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	불입액40%와 72만원		
	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밖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득	투자조합 출자 등	2013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	2016.12.31까지적용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	2016.12.31까지적용			
		2015년 이후 출자 투자분			조합등	-	작성방법 참조			
					벤처등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공 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				
		②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				
		④ 전통시장사용분				-				
		⑤ 대중교통이용분				-				
		계(①+②+③+④+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 · 공제명세		세액감면 · 공제 명세							
V · 세액감면및공제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자	입국목적	[]정부가협약[]기술도입계약[]「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조세조약상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					
			연금저축		납입금액	-					
		연금계좌 계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15%	
				보험료 계			-		-		
			의료비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			15%	
				의료비 계			-		-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 · 학원비 등	-	1명당 300만원			
				초 · 중 · 고등학교(명)		공납금	-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	전액			
		교육비 계			-		-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100 /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			15% (25%, 30%)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							
기부금 계				-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근무기간			직책						
		이자상환액			30%						
월세세액공제		월세액			-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장지 80g/㎡(재활용품)]											

연금·저축등소득·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또는증권번호)		

2)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에 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공제금액
		(또는증권번호)		

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저축구분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또는증권번호)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에 대한명세를작성합니다.

금융회사등	계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또는증권번호)		

작성방법

-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를받는소득자에대해서는해당소득·세액공제에대한명세를작성해야합니다. 해당계좌별로납입금액과소득·세액공제금액을적고,공제금액이0인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퇴직연금구분란은퇴직연금(DC, 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구분하여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연금저축구분란은개인연금저축과연금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의저축구분란은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및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 공제금액란은근로소득자가적지않을수있습니다.

					(8쪽 중 제8쪽)				
[] 월세액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									
⑦ 임대인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택	⑩주택	⑪ 임대차계약서 상	⑫ 계약서상		⑬ 연간	⑭세액공제금액 (원)	
성 명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주소지	임대차 계약기간		월세액(원)		
(상 호)			면적(㎡)		개시일	종료일			
※⑨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7 기타:8									
※⑫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⑱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2)공제금액	
		계약기간		이자율	⑲ 계	⑳ 원금	(21)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23)임대인	(24)주민등록번호	(25)주택	(26)주택	(27)임대차계약서상		(28)계약서상		(29)전세보증금	
성 명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주소지		임대차 계약기간		(원)	
(상 호)			면적(㎡)			개시일	종료일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1, 다가구:2, 다세대주택:3, 연립주택:4, 아파트:5, 오피스텔:6, 고시원:7 기타:8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의료비 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2017)년 의료비 지급명세

[illegible]

기부금 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2017)년 기부금 지급명세

[illegibl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⑩ 합 계 액

100 000

—

⑮-3

00,000

의
의
의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m' 또는 중질지 80g/m']

장애우 지원수당 안내문

1. 목적 : 장애직원에 대한 수당금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2. 지원대상 (캡스텍직원)

-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직원
-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소지한 직원

3. 수당 지원 기준

구분	수당금액
장애(경증,중증)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연 1회 / 20만원

4. 제출서류

- 1) 장애인 증명서 원본 (사본 가능) / 국가유공자증 사본 (상이 국가유공자 해당) 중 선택 제출
*장애인 증 사본 접수 불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인정일 확인을 위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 요청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 2)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5. 지급시기

11일자 급여 - 3월 11일 / 28일자 급여 - 2월 28일 (매년 1회)

6. 제출방법

- 1) 본사 인사팀 우편 접수 (별도 제출시)
- 2)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

7.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 - 14 OTC 빌딩 2층 인사팀 이승협 (135-090)

8. 연락처

02-3485-9211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상기 본인은 장애우 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하며,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장명	사번	성명	
장애/상이 종류 및 등급 (예:지체장애 6급/ 공상군경 7급)			
연락처		특이사항	

* 첨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20 년 오 일

신청인 : (인)

